

전북대학교 치과대학 기획평가위원회 규정

제정 2014. 03. 01

개정 2018. 09. 01

개정 2020. 03. 01

개정 2024. 08. 08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기획평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에 대한 사항을 다룬다.

제2조(구성)

① 위원장은 치과대학장(이하 “학장”이라 한다)으로서 교무부학장, 학생부학장, 연구부학장, 치의예과장, 교육실장 및 치과진료처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며, 학장이 임명하는 임명직위원, 치과대학총동창회장, 치과대학학생회장으로 구성된다.

② 임명직위원은 학장이 임명하는 약간 명으로 하며, 임명직위원 중 1인을 학장이 부위원장으로 임명하여 필요시 위원장을 대행하게 한다.

제3조(임기)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, 임명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4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① 치과대학 발전계획 수립, 발전 기획 및 평가사업
- ② 치의학교육 인증평가에 대한 계획서, 보고서 작성 및 발간 작업
- ③ 기획 및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
- ④ 기타 교수회의에서 위임한 사항

제5조(회의)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공포한 날(2018. 9. 1)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(2020. 3. 1)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(2024. 8. 8)로부터 시행한다.

제9편

실
설
위
원
회
규
정